

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002-95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2.
제 출 자 : 김제시장

1. 개정이유

- 그 동안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읍·면·동 기능전환방침에 따라 시로 이관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점용료 부과·징수사무를 시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징수의 위임조항을 삭제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관련변경 : 법령 읍·면·동 기능전환 지침
- 예산조치 사항 : 별도조치사항 필요없음
- 협의등 : 별도조치 사항 필요없음

김제시조례 제 호

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- 부 칙 -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7조(징수의 위임)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·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<삭제></u></p>